

[일련번호 01] 감사관 박지연, 양성진

인천광역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기채간제근로자 채용 사전협의 절차 이행 및 규정 정비 소홀

기 관 명 인천연구원

관 계 부 서 경영지원실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인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신규임용방법)제2항에서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관련 필요한 사항 및 초빙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직원채용규칙(‘96.9.12)」, 「연구지원직운영규칙(‘19.12.16)」, 「비상임직원 채용 및 수당지급규칙(‘09.12.8)」을 제정·개정하였으며 채용규정별 비교내용은 붙임과 같고 초빙연구원, 연구(사무)보조원, 일용직은 「비상임직원 운영지침(2019.3.8.)」의 채용절차[표1]에 따라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비상임직원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심사 내용	전공의 적합성, 경력의 적합성,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기타 발전가능성
배점 기준	전공적합성(40점), 경력적합성(40점) 발전가능성(외국어 및 자격증 등, 20점)
합격 기준	평점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 이내
심사자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부서장



2차 면접	
심사 내용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심사
배점 기준	전문지식과 업무능력(5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창의성(30점) 기타 지역에 대한 이해 등(30점)
합격 기준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선정
심사자	2인(해당 연구책임자, 소속 부서장)

※ 자료출처 : 인천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채용계획 사전협의 미이행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 ①신규채용, ②채용 계획 수립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 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연구원은 2022년 총26회[정규직(2회), 초빙연구원(24회)] 공개채 용을 실시하면서 정규직 채용계획(2회)은 인천시와 사전협의하였으나 초빙연구 원(24회) 채용계획은 인천시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

2. 면접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직원의 인사, ④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⑤ 대상자의 결정 바.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추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천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7조제3항 또한 해당사항이 명시된 사항으로, 각 호는 아래와 같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인천연구원에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에 따라, 모든 채용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험 위원 위촉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을 참여시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연구원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전, 심사위원과 응시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제척’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및 응시자에게는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각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안내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에서는 「비상임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의 경우 외부위원의 위촉 없이 채용을 요구했던 부서의 연구원 혹은 해당센터의 센터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해당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던 기존 근무자들이 다수 ‘초빙연구원’으로 채용되는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의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표2] 2022년도 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채용 중 기존근무자 채용현황

연번	성명	채용사항	채용공고일	경 력	면접전형 심사위원(인천연구원)
1	○○○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및 협력 분야	2022. 6. 14.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20.8.~채용시까지)	○○ 인천기후환경연구 센터장*
					○○ 기후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기후정책연구팀장
2	○○○	물류분야	2022. 6. 17.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20.12.~채용시까지)	○○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3	○○○ *연번3,4 동일인물	도시보건 · 사회복지 분야	2022. 7. 6.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22.4.~채용시까지)	○○ 도시경영연구실 센터장*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4	○○○ *연번3,4 동일인물	복지분야	2022. 8. 10.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22.4.~채용시까지)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5	○○○	교통분야	2022. 11. 18.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22.9.~채용시까지)	○○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6	○○○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분야	2022. 12. 1.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등 (‘19.6. ~ 채용시까지)	○○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기후정책연구팀장*
7	○○○	도시계획 분야	2022. 12. 14.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등 (‘20.4.~채용시까지)	○○ 도시공간연구부 부장(선임연구위원)
					○○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자료출처 : 인천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표시 심사위원은 서류전형 중복 참여 심사위원

3. 비상임직원 운영지침의 추천 채용 가능 규정 정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할 경우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의 「비상임직원 운영지침」에는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1.기준에 근무하고 있는 초빙연구원 등을 재임용할 경우, 2.채용 공고실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채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단, 재계약시에는 불가), 4.연속성이 필요한 연구과제의 초빙연구원 등을 재임용하는 경우, 5.기타 업무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부서장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연구원장은

[주의] 채용계획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시고 시험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에 맞게 비상임직원 운영지침의 ‘연구책임자 또는 부서장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채용관련 규정 비교표

구분	구분	시험방법
인사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임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비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
	제3조 (직원의 구분)	① 연구직, 관리직, 연구지원직으로 구분 ②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③ 관리직 :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운전직 ④ 연구지원직 : 연구원의 연구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⑤ 연구지원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함('20.01.02)
	제3조의2 (초빙연구원)	①정원외의 직원[초빙연구원, 연구(사무)보조원, 일용직] ②제1항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함('15.12.28)
	제5조 (신규임용)	①직원의 신규임용은 자격, 시험성적, 연구실적, 경력, 특수자격과 기타 능력의 실증
	제6조 (신규임용 방법)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일반임용 원칙,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총원이 공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음 ②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초빙연구원 등에 대한 채용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15.12.28)
직원채용 규칙	제1조 (목적)	인사관리규정 제6조(신규임용의 방법)에 따라 공개채용 및 경력 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제2조 (모집공고)	공개경쟁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전까지 임용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고
	제3조 (시험과목)	별표1 : 공개채용단계 및 시험과목
	제4조 (시험방법)	시험방법 : 서류심사, 연구(업무)능력심사, 필기시험, 연구발표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연구직과 관리·운전직을 구분하여 실시
	제5조의2 (채용계획 등의 심의)	①직원채용의 전반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②심의사항 : 채용계획, 전형단계별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연구 지원직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라 연구지원직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 (신규채용 절차 등)	① 채용공고는 직원채용규칙 제2조 준용, 연구원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② 전형방식 :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실시(필요시 발표심사 등 병행) ③ 면접심사 대상자 : 서류심사 평점 70점 이상인 자로 3배수 이내 ④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적격자 선정 ⑤ 채용계획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비상 임직원 운영지침	제정사유	비상임직원 채용 및 수당지급 규칙
	용어정의	초빙연구원 : 연구과제의 공동연구, 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연구(사무)보조원 : 연구 또는 일반행정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일용직 : 단순한 노무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방법	- 공개채용원칙 - 연구책임자 또는 부서장 추천 채용 가능 1.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초빙연구원 등을 재임용 2.채용공고실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3.채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단, 재계약시에는 불가) 4.연속성이 필요한 연구과제의 초빙연구원 등을 재임용하는 경우 5.기타 업무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 10일 이상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채용절차	채용공고요구서 제출 : 연구책임자 채용공고 실시 및 응시원서 접수 : 인사부서 서류심사 및 면접 : 해당 연구자 및 부서장 채용기안 상신 : 연구책임자

※ 자료출처 : 인천연구원 규정 재구성